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35
----------	-------

발의연월일 : 2025. 8. 19.

발 의 자 : 전용기 · 강준현 · 박 정
송옥주 · 박해철 · 민병덕
윤종균 · 이연희 · 박지원
정준호 · 정을호 · 김기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집회, 시위, 옥외광고물 등을 통해 사전투표, 개표 등 선거 절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국민의 선거 신뢰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옥외광고물의 경우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다수 설치되어 허위 사실이 불특정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왜곡된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일부 세력이 의도적으로 선거 불복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상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선거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투표 및 개표 등 선거 과정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37조제1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집회 및 시위·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37條(選舉의 自由妨害罪) ①選 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 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第237條(選舉의 自由妨害罪)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u> <u>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u> <u>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u> <u>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u> <u>집회 및 시위·옥외광고물 등</u> <u>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u> <u>· 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u> <u>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u> <u>자</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